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95
----------	-------

발의연월일 : 2025. 12. 8.

발 의 자 : 박덕흠 · 엄태영 · 안상훈
고동진 · 서천호 · 김정재
김재섭 · 김예지 · 조지연
김선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라 도입된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시·군·구 체육회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및 복지센터 등에서 건강 유지,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운동프로그램을 개발·지도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관련 법령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 임금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또는 정책적 방향에 따라 처우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저하 및 이직률이 높은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해 호봉제, 가족수당 등이 포함된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력별 표준 임금표(이하 “표준임금표”라 한다)를 마련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표준임금표에는 호봉제, 가족수당, 상여금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표준임금표에 포함되는 사항은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생활체육지도자의 처</u> <u>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u> <u>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u> <u>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력별 표</u> <u>준 임금표(이하 “표준임금표”라</u> <u>한다)를 마련하여 고시하고, 지</u> <u>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준수</u> <u>를 권고할 수 있다.</u> <u>② 표준임금표에는 호봉제, 가</u> <u>족수당, 상여금 등 복리후생에</u> <u>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라 표준임금표에</u> <u>포함되는 사항은 공무원에 준</u> <u>하여 지급하되, 구체적인 기준</u> <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u> <u>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 각각</u> <u>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한다.</u>